



캄보디아에서 식음료를 유통하려면!

식음료 유통위해서는 캄보디아어 성분 표기 및 보건부 인가 필요

‘Food ingredients should be written in Khmer(식음료 성분은 캄보디아어로 표기해야 한다)’는 5월 29일자 기사를 통해 현지 영자신문인 크메르타임즈는 보건부를 인용하여 “안전과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음료는 캄보디아어로 성분 표기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 크메르타임즈의 보도 내용은 지난해 11월 2일 공포된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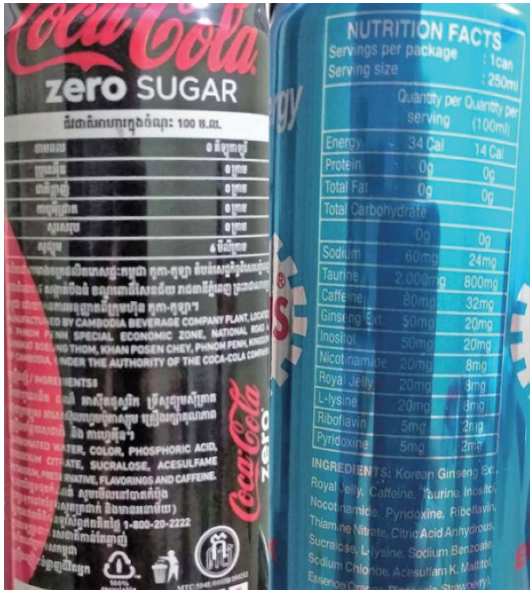
기사에 따르면 보건부는 “모든 식음료는 유통 전 보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부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 품목별로 보건부가 요구하는 제조사의 성분분석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1. 소비자보호법 개요

- 소비자 보호 및 공정 상행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은 2019년 11월 2일 공포됐다. 동 법은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모든 제품(부동산 포함)과 서비스와 이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 소비자보호법은 11장 51조로 구성되어 있다. 1~3장은 전문과 일반 조항, 목적, 용어 정의와 국가소비자보호위원회(National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 NCPC)와 소비자단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4~5장은 부당상행위와 부당관행, 6장은 최소한의 정보 공개와 관련한 표기 의무, 7~9장은 NCPC의 민원 접수, 조사, 결정 절차, 이의 신청을 다루고 있다. 10장은 처벌규정, 11장은 부칙이다.





▲ 캄보디아에서 시판되고 있는 코카콜라<사진 왼쪽>와 박카스, 코카콜라는 이미 성분을 캄보디아어로 표기하고 있지만 박카스는 영어로만 표기하고 있다.

2. 집행기관

- 소비자보호법의 집행기관은 국가소비자보호위원회(NCPC)이며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및 기관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NCPC의 조직과 기능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 NCPC는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를 접수하거나 사법경찰관을 두고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사법 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

3. 소비자협회

- 소비자들은 소비자협회를 결성할 수 있다. 단, 소비자협회 창립은 협회 및 NGO법에 따라 내부부의 허가 및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소비자협회의 역할은 NCPC는 물론 소송에서 소비자를 대표하며 공개포럼과 언론에서 소비자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것 등이다. 또 NCPC의 위임 사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4. 사업자의 부당 상행위

- 사업자는 광고와 판촉 등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떠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이용하는 행위 즉 '부당 상행위'를 할 수 없다.
- 기타 부당 상행위는 부령으로 결정한다.

- 또 소비자보호법은 캄보디아 법률에서 처음으로 피라미드형 판매를 부당 상행위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피라미드 사업은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사업 자체를 막는 법률은 없었다.

5. 소비자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

- 질량, 원산지, 성분, 제조일자, 유통일자, 생산정보 등의 최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표기해야 할 정보는 관계 부처의 부령으로 정한다.
- 외국어 표기도 병행할 수 있지만 캄보디아어 표기는 의무적이다.

6. 처벌

- 소비자보호법 위반시 서면 경고, 상업등록·인허가의 일시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단 아래와 같이 위법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신체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내릴 수 있다. (4000리엘=1달러)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표기 : 6개월~2년 징역과 100만~400만리엘(100달러) 벌금형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잘못된 표기 : 2년~5년 징역과 400만~1000만리엘 벌금형 ▲허위 광고나 사기 판매 등 : 최대 5000만리엘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한 피라미드 판매 : 6개월~2년 징역과 100만~400만리엘 벌금형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피라미드 판매 : 2년~5년 징역형과 400만~1000만리엘 벌금형 ▲표기 의무 미준수 : 최대 1000만리엘

Key Point

표기와 관련된 구체적 지침은 국가소비자보호위원회(NCPC)가 설립된 후 발표될 전망이다. 5월 초 정부 관계자는 "NCPC 관련 시행령 초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며,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혀 3분기, 늦어도 올해 안에 동 시행령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현재 유통 중인 식음료(맥주 포함)의 90%는 캄보디아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캄보디아어 표기를 강제될 경우 시장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며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둘 가능성도 크다. 일단 제도가 정착하면 캄보디아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식음료의 대형유통점 납품이 사실상 어려워져 용기 대체 또는 라벨 스티커 부착 등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보건부의 식음료 인가는 이미 시행중이나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 단속은 국가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립된 후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식음료 제조사의 정상 채널을 통해 수출된 경우 문제가 없으나 도매상으로부터 매집하여 수출한 경우 제조사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기가 힘들어 보건부의 인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보건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한국산 화장품 판매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과 별도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현재 검토 중이며 올해 말 국무회의,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전망으로 신선 과일·농산물 수출업체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